

화 해 계 약 서

A토지소유자 ○○○을 「갑」, B토지 소유자 ○○○을 「을」이라 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.

- 제1조(합의사항) 갑 소유의 아래 표시 A토지와 을 소유의 아래 표시 B토지와의 경계에 관한 모든 분쟁을 본 화해계약에 의해 종결하는 것으로 갑과 을은 합의하였다.
- 제 2 조(경계의 확정)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와의 경계 (이하 '경계선'이라고 한다) 는 별지 첨부 도면 '가'점과 '나'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.
- 제 3 조(경계선을 넘는 토지의 인도) 을은 을 소유의 건물 중 경계선을 넘는 부분을 철거하고 경계선을 넘은 토지(사선표시부분)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○○일 이내에 갑에게 인도한다.
- 제 4 조(철거비용) 갑은 을에 대해 제3조의 경계선을 넘는 건물의 철거비용 금 ○ 원을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.
- 제 5 조(경계선상 담의 설치) ① 갑은 경계선을 넘은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가 완료된 날부터 ○○일 이내에 경계선상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담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

○ 높이 : ○○미터

○ 길이 : '가'점에서 '나'점까지 약 ○○미터

○ 두께 : ○○센티미터

- ② 전항의 비용은 갑과 을이 각자 2분의1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, 담의 소유 권은 갑과 을이 공유한다.
- 제 6 조(화해절차) 본 계약은 ○○년 ○월 ○일까지 갑이 을을 상대로 ○○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기로 하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.
- 제 7조(기타) 본 계약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갑과 을간의 그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.

이상과 같이 화해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은 각1 통씩 보관하다.



20ㅇㅇ년 ㅇ월 ㅇ일

A 토지소유자	주	소					
	성 또 상	편이 기기 /어	인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
B토지소유자	주	소					
	성 또 상	팝이 기기 /어	인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

[A 토지의 표시]

소 재 이이시 이이구 이이동 이이번지

지 목 대지

면 적 OOOm²

[B 토지의 표시]

소 재 이이시 이이구 이이동 이이번지

지 목 대지

면 적 OOOm²

[A, B토지의 도면]



